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소영철, 강석주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원중, 김재진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
박춘선, 서호연, 옥재은,
유만희, 이병윤, 이상욱,
이상훈, 이성배, 이숙자,
이은림, 이종환, 임규호,
임춘대, 장태용, 최유희,
허 훈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, 적자 규모,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그런데,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,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음
- 실제로,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'기후동행 카드'의 경우,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,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
- 또한 '돌려쓰기'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고,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
-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정기·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·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<u>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 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제2항* (시행계획의 주요내용)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* 제2항 :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가격 산출,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, 지원계획 등의 사항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계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